

주제: 국민연금

1.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

공적 연금이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다원적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연금

특수 직역연금 제도들

특수직역연금 제도들: 공무원 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1975)

특수직역 연금제도들은 보험료 수준, 연금 급여수준 등 여러 가지 점에서 국민 연금과 차이

공적 연금 제도의 현황(이준영 180면)

구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 시기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집행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사학연금관리공단)	국방부(복지보건실 연금과)
적용대상		18-60세 국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보험료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9%	보수월액(소득월액의 70%)의 17%		
	소득상한	있음	없음		
분담형태	분담형태	사용자와 근로자 각 4.5%(지역가입자 8%)	국가, 공무원 각 8.5%	본인 8.5%, 법인 5%, 국가 3.5%	국가 및 군인 각 8.5%
	종류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퇴직연금:가입기간 20-33년/ -장애 및 조기사망시; 단기급여 지급		
수준	수준	40%로 조정	76%(33년 가입, 최종3년 보수대비)		
노령(퇴직)연금	연간 지급률	가입1년당1.5%가산	20년까지50%,1년당 2% 가산		
	급여산정기준	전가입자 평균소득 및 생애가입기간 평균소득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	매년 물가상승률, 단3년마다 재직자보수상승률감안		
	수급요건	10년이상가입,60세(2033년부터 65세)	20년 이상가입, 퇴직시(60세 또는 정년도달시)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 선택가능		

2. 국민(복지)연금의 역사

이전의 연금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

도입배경:

1974년 실시시기 1년 유보,

1975년 무기한 연기(사실상의 사문화)

무기한 연기의 배경; 석유파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

1980년대 들어 제도도입 논의

논의의 배경

1)노령인구의 증가(60세 이상인구 1973년 5.2%에서 1986년 6.8%로)

2)경제적 여건이 호전됨

-1인당 국민소득 1986년 2,568달러로 증가, 정부정책에 힘입어 물가안정

-베이비 붐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가 시작되는 시기인 1980년 대 중반이 적기라고 판단

국민복지연금 실시 준비위원회 구성(1984)

공청회 개최(1986년 6월) - 국민연금의 명칭 변경

1986년 12월 17일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1988년 제도 실시- 가입대상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422만명)

연금제도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

1992년 5-9인 고용업체 종사자 당연적용

1995년 농촌지역으로 확대(배경-우루과이 라운드)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자영업자 집단)

3.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1)장기적 재정 불안정

원인: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어 거두어드릴 총액보다 급여로 지출될 총액보다 많게 설계됨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로 다른 선진 산업국가들의 연금 수급 연령보다 5년 빠르게 됨

-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연금 부양률이 급속히 전가하게 될 전망임

연금 부양률은 1977년 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1, 2020년 26, 2030년 41%로 증가될 전망임.

(2) 국민의 불신

국가의 다소 방만했던 연금 기금 운영 실태가 국민의 불신을 키움.

공공부문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음(1997년 당시 67.4%)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불신을 증폭시킴.

(3) 지역가입자 소득과약의 문제점

농어민, 자영업자 집단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향

소득 하향 신고의 문제점

- 소득 재분배 왜곡(임금근로자 집단/농어민, 자영업자 집단)
-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킴
-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의 갈등 유발
- 두 집단 간의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개정 법안의 준비과정

1997년 5월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 발족-동년 12월 최종 보고서

1998년 2월 정부 개정 법안 국회 제출--->동년 12월 국회 비준

3)개정법의 내용

- (1)가입대상자 범위 확대;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농업 종사자 집단으로부터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시지역 전 주민으로 적용대상자 범위 확대됨
- (2)급여 수준을 하향조정함 (75%--->60%로 하향조정)
- (3)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 (4)최저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초기노령연금 수급조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함
- (5)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신설
유족연금의 배우자 수급요건을 완화함-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인정함.
- (6) 보험료율 조정
근로자 보험료 노,사가 각각 4.5%씩 분담
농업종사자, 자영업자 보험료 수준 8%로 조정(종전 6%)
- (7)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재정 계획수립
- (8)기금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의 강제예탁 중단
- (9)기금 운용위원회의 가입자 참여확대-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20명의 위원 중 정부공무원(6), 공익위원(2)를 제외한 위원들을 가입자 대표로 함.

4.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

1) 의무(당연) 가입대상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

당연적용 제외자 집단: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등

당연적용 제외자 집단: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 그 배우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등

당연 적용 대상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취업자 집단, 기타 실직자, 학생, 군인 등 비취업자들도 가입대상에 포함됨.

2)급여 국민연금 급여: 급여는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것에 해당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 비례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기본연금액=1.8×(A+B)×(1+0.05n)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n: 20년 초과 연수

가급연금은 연금가입자의 배우자 및 기타 부양가족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국민연금 수준은 개정 이전에 소득대체율이 45%(30년 만기가입자)로서 ILO 최저기준 40%를 상회하였으나 개정 이후 ILO 기준에 합치시킴(40%)

급여 종류 및 조건

급여유형	수급조건	가입기간/연령	급여수준
노령연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할 때	기본 연금액의 100%+ 가급연금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도달.	기본 연금액의 47.5%에서 92.5+가급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서 60-65세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조사하지 않을 때	수급연령 55-59세 75-95%+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후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 1-4급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
유족연금	가입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 시 유족에게.	가입기간 10, 10-20, 20년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 도달, 가입자의 사망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 상실, 국외이주		연금보험료+ 이자
사망일시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지급함.

출처: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312면 요약)

3)재정

국민 연금 재원의 대부분은 보험료 수입
 보험료 올 소득의 9%(본인과 사용주가 각각 4.5% 씩)
 지역가입자 9%(200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금

기금 총액 약 400조 정도

투자처: 대부분 금융부분에 투자함(99% 이상), 복지부분에는 0.2%(2909억) 투자에 불과 (2006년)

4) 관리운영 체계

정책결정의 책임 : 보건복지부

내용: 제도 적용과 적용 시기,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 결정
급여수급 요건과 급여수준, 장기재정 추계 및 기금 운용계획
가입자와 수급자 복지증진사업 등

집행기관: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입자 기록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과 지급,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